

4 경력평정(승진규정 제2장)

1. 경력평정기간 및 경력별 평정점(승진규정 제8조 내지 제11조, 부칙 제7조)

- 가. 경력평정기간은 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으로 총 20년을 평정
- 나. 경력평정점은 승진규정 제9조 관련 [별표 1] 및 제10조 관련 [별표 2]를 참조하되, 매년 2월말일 평정 시 기본경력 평정은 승진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계산하고, 합계에서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경력평정 기간 중 일시 퇴직 기간,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정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하되,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2. 평정자와 확인자(경력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평정 시)

기관명	평정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교감	교감	교장
교육지원청	장학사, 전문상담순회교사, 교과순회전담교사, 특수교육순회교사	소속과장	교육장
직속기관	교육연구사	소속부장	기관장
도교육청	장학(교육연구)사, 전문상담순회교사, 특수교육순회교사	소속장학관(사무관)	교원인사정책과장

* 교장 유고 시 교감의 확인자는 교육국(과)장, 교사의 확인자는 교감

* 교감 유고 시 교사의 평정자는 교장

[별표 2] 경력의 등급별 평정점 (승진규정 제10조 관련 및 부칙 제2조 관련)

구분	등급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평정점	평정만점
기본경력(15년)	가 경력	월수 × 0.3555	일수 × 0.0118	64.00
	나 경력	월수 × 0.3333	일수 × 0.0111	60.00
	다 경력	월수 × 0.3111	일수 × 0.0103	56.00
초과경력(5년)	가 경력	월수 × 0.1000	일수 × 0.0033	6.00
	나 경력	월수 × 0.0833	일수 × 0.0027	5.00
	다 경력	월수 × 0.0666	일수 × 0.0022	4.00

* 교육공무원의 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각각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예: 초과경력 중 '나'경력이 5년이면 계산상은 $60 \times 0.0833 = 4.998$ 점이지만 5점으로 평정한다.)